상담심리사 취득과정

목 차

I. 1	급 쉬늑과성	
1.	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	 1
2.	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	 3
3.	상담 비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	 5
4.	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	 7
5.	외국학회의 인턴십을 마친자	 9
п. 2 1	급 취득과정	
1.	상담관련 석사재학	 12
2.	상담관련 학사학위 취득자	 14
3.	비상담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	 16
4	이국이 상달 및 신리치료 부야이 저무가 자격증 소지자	 20



I. 1급 취득과정

1.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•	자격시험 합격	•	최소수련내용 충족	•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	_
	학회가입
1단계	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
	또는 자격변경
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
	① 석사학위 취득 후, 3년(36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
	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
2단계	 ● 주의사항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○ 단, 수련 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, 석사학위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 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
	● 이수과목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 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
	자격시험 합격
	<자격시험 응시서류>
	① 자격시험 응시원서
	② 상담경력확인서
3단계	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 :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, 심리진단 및 평가,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,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

	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
	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
	○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	최소수련내용 충족
4단계	①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
	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<표 1>참고
	자격심사합격
	<자격심사 청구서류>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
	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
	③ 이력서
	④ 수련수첩
_ = 1 = 0	⑤ 연구실적물
5단계	⑥ 공개사례발표자료
	⑦ 대학원 학위증명서
	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
	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	● 공개사례 발표자료
	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	자격취득
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
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
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2.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•	자격시험 합격	•	최소수련내용 충족	•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	학회가입									
1단계	사람심리사 2급 취득 후 정회원(심리사 정회원)으로 자격변경									
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								
	① 2급 취득 후 4년(48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									
2단계	● 주의사항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○ 단,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									
	● 이수과목 ○ 과목 이수 없음 (2급 취득자로 1급에 응시할 경우, 이수과목 확인 하지 않음)									
	자격시험 합격									
	<자격시험 응시서류>									
	① 자격시험 응시원서									
	② 상담경력확인서									
	③ 2급 자격증 사본									
3단계	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 :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, 심리진단 및 평가,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,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									
	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○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									
	증빙서류									
, E1 =11	최소수련내용 충족									
4단계	①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									
	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<표 1>참고 자격심사합격									
_=! =!!										
5단계	<자격심사 청구서류>									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									

	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
	③ 이력서
	④ 수련수첩
	⑤ 연구실적물
	⑥ 공개사례발표자료
	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	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	자격취득
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
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
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3. 상담 비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•	자격시험 합격	•	최소수련내용 충족	•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	학회가입
1단계	상담 비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준회원으로 입회
1671	(단,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박사학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
	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)
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
	① 박사과정 입학 후, 3년(36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
	② 박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·석사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
2단계	 ● 주의사항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단,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단, 박사과정 입학 이전의 수련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● 이수과목 상담관련과목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
	 기초과목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검정응시 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 과목 이수는 박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
	자격시험 합격
3단계	<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
	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: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, 심리진단 및 평가,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,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

	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
	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
	○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	최소수련내용 충족
4단계	①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
	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<표 1>참고
	자격심사합격
	<자격심사 청구서류>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
	② 상담경력 종합확인서
	③ 이력서
	④ 수련수첩
5단계	⑤ 연구실적물
2541	⑥ 공개사례발표자료
	⑦ 대학원 학위증명서
	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
	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	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	자격취득
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
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
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4.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•	자격시험 합격	•	최소수련내용 충족	•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	학회가입
1단계	
I건계	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
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
	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
	②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(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
2단계	심리학회의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의 자격증)
	③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
	④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지 자격증 인정여부 결정
	자격시험 합격
	<자격시험 응시서류>
	① 자격시험 응시원서
	② 국내 상담경력확인서
	3 이력서
3단계	④ 아마니 ④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
	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외국학위의 경우,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)
	○ 의용학교 학계용용시 및 용학용용시(의학학계의 용수, 현학현학계인 결중 음수) ○ ⑥ 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자격증 사본
	③ 외국 응답 및 담디지표 분야 단문기 지극 등 지든
	8 자격증 및 경력·수련실적에 대한 번역본 최소수련내용 충족
4단계	① 공개사례발표 1사례, 총 10회기 이상
	자격심사합격
	<자격심사 청구서류>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
	② 공개사례발표자료
5단계	③ 자격시험 응시서류 중, ③ ~ ⑧ 서류 제출
	※ 자격시험 응시 후, 같은 해에 자격심사에 응시할 경우, 위의 ①, ② 서류만 제출
	※ 제출 서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	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, 녹음자료							
	자격취득							
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							
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							
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							

5. 외국학회의 인턴십을 마친자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•	자격시험 합격	•	최소수련내용 충족	•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	4141-101								
	학회가입								
1단계	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								
	또는 자격변경								
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							
	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								
2단계	② 본 학회와 MOU를 체결한 외국학회(APA, ACA)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 과정								
2071	을 마친 자								
	③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								
	④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 인정여부 결정								
	자격시험 합격								
	<자격시험 응시서류>								
	① 자격시험 응시원서								
	② 국내 상담경력확인서								
3단계	③ 이력서								
	④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								
	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외국학위의 경우,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)								
	⑥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								
	⑦ 경력·수련실적에 대한 번역본								
451211	최소수련내용 충족								
4단계	①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								
	자격심사합격								
	<자격심사 청구서류>								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								
	② 수련수첩								
	③ 공개사례발표자료								
5단계	④ 응시료 입금증 사본								
	⑤ 자격시험 응시서류 중, ③ ~ ⑦ 서류 제출								
	※ 자격시험 응시 후, 같은 해에 자격심사에 응시할 경우,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만								
	제출								
	※ 제출 서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								
	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
자격취득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약 납부 완료 ② 자격중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		
6단계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의 납부 완료		자격취득
납부 완료	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
	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
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		
	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<표1>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(상담심리사 1급)

	영역	일반 :	수련자					
7	접수면접		-					
개 인	면접상담	20사례 합 400회 이상 (부부, 가족, 아동상담 포함)						
상 담	수퍼비전	50회(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)이상						
집	참여경험	2개 집단 이상(집단별 15시간 이상) 총 3	0시간 이상 참여					
단 상	리더 또는 보조리더	2개 집단 이상(집단별 15시간 이상) 총 3년	0시간 이상 진행					
담	수퍼비전	2개 집단 이상(집단별 15시간 이상)						
	검사실시	20사례 이상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	인용 검사 1개 포함)					
	검사해석	20사례 이상						
	수퍼비전	10사례 이상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	인용 검사 1개 포함)					
심 리 평 가	검사의 종류설명	예: K-WAIS, K-WPPSI, K-WISC, KEDI- 단, 한 검사가 전체사례의 1/2을 초고 *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2	P, BGT, DAT, SCT, KFD,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S, K-WPPSI, K-WISC, KEDI-WISC, K-ABC 등 나가 전체사례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 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(개인용 이외의 검사) 시, 채점,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, 공인된 출판사에서 하는 검사 단검사, 적성진단검사, MBTI 등					
공	개사례발표	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이상, 총 40회기 이상. 단,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이상, 총 30회기 이상 (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)						
1	상담사례 연구활동	학회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						
1	학술 및 견구활동	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						
	영역	상담심리	리사 1급					
	o -	외국자격소지자	외국수련자					
개 인	면접상담	-	7사례, 총 100회기 이상					
상 담	수퍼비전	-	5회					
공	개사례발표	1사례(10회기 이상)	2사례(20회기 이상)					

Ⅲ. 2급 취득 과정

1. 상담관련 석사재학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>	자격시험 합격	>	최소수련내용 충족	>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# 4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경우,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석사 입학 후, 1년(12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 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 ● 주의사항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현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이수과목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당, 상당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당, 청소년 상당, 진로상당, 아동상당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방일 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용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조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 자격시험 합격 < 자격시험 합격 < 자격시험 흥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 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협격 유효기간은 5년		취취기이
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석사 입학 후, 1년(12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 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 ● 주의사항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이수과목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반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방달 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,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청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 자격시험 합격 <자격시험 합격 <자격시험 응시셔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 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	1단계	학회가입
① 석사 입학 후, 1년(12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 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 ● 주의사항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.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.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.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.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● 이수과목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지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병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 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.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초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 자격시험 합격 <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 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		
2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 ● 주의사항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하당	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
● 주의사항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변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이수과목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당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은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바회심리학, 고급발을 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 자격시험 합격 자격시험 합격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① 석사 입학 후, 1년(12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
2단계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반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 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○ 이수과목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 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과목, 기초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 자격시험 합격 < 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 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		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
○ 상담관련과목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 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적용한다. 개정 전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 자격시험 합격 지구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	2단계	 ◇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◇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
< 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		 ◇ 상담관련과목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 ◇ 기초과목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 심리학 등(中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
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		자격시험 합격
	3단계	 자격시험 응시원서 상담경력확인서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● 공통사항

	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○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	최소수련내용 충족 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
4단계	
	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<표 2>참고
	※ 본 학회의 심리사수련회 수료자는 <표 3> 참고 자격심사합격
	< 자격심사 청구서류>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
	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
	③ 이력서 A 검 A 컨
5단계	④ 수련수첩
5단계	⑤ 최종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
	⑥ 공개사례발표자료
	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	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	자격취득
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
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
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2. 상담관련 학사학위 취득자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•	자격시험 합격	•	최소수련내용 충족	•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	학회가입
1단계	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
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
	① 학사학위 취득 후, 2년(24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
	② 학부과정 중 과목이수 (상담 3과목, 기초 3과목)
	● 주의사항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
2단계	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
	○ 단 , 학회 입회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이후부터 인정
	● 이수과목
	● 이구피득 ○ 상담관련과목 :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사례실습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 소년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, 상담심리학, 이상심리학, 심리검사, 임상심 리학, 학교심리학, 교육심리학 등
	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성격심리학, 사회심리학, 발달 심리학, 학습심리학, 조사방법론 등
	자격시험 합격
	자격시험 합격 <자격시험 응시서류>
	<자격시험 응시서류>
	< 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
3단계	<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
3단계	 < 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학부 성적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명서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
3단계	< 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학부 성적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명서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
3단계	< 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학부 성적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명서 ● 공통사항 ○ 시험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
3단계	< 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학부 성적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명서 ● 공통사항 시험과목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위 서류 이외의 제출서류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

	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<표 2>참고							
	※ 본 학회의 심리사수련회 수료자는 <표 3> 참고							
	자격심사합격							
	<자격심사 청구서류>							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							
	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							
] ③ 이력서							
	④ 수련수첩							
5단계	⑤ 최종학위증명서							
	⑥ 공개사례발표자료							
	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							
	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
	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							
	자격취득							
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							
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							
	납부 완료							
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							

3. 비상담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•	자격시험 합격	•	최소수련내용 충족	•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	학회가입						
1단계	비상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경우,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						
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					
	① 학사학위 취득 후, 3년 (36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						
2단계	● 주의사항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						
	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						
	● 이수과목 ○ 이수과목 없음.						
	자격시험 합격						
	<자격시험 응시서류>						
	① 자격시험 응시원서						
	② 상담경력확인서						
	③ 학부 성적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명서						
	● 공통사항						
3단계	○ 시험과목 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						
	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						
	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						
	○ 위 서류 이외의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						
	최소수련내용 충족						
4 E L JII	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						
4단계	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<표 2>참고						
	※ 본 학회의 심리사수련회 수료자는 <표 3> 참고						
	자격심사합격						
5단계	<자격심사 청구서류>						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						

	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
	③ 이력서
	④ 수련수첩
	⑤ 최종학위증명서
	⑥ 공개사례발표자료
	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	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	자격취득
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
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
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<표2>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(상담심리사 2급)

영역		상담심리사 2급						
접수면접		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						
개 인	면접상담	면접상담5사례, 합 50회 이상						
상 담	수퍼비전	10회(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)이상						
집 단 상	참여	참여 또는 보조리더 -2개 집단 이상 (집단별 15시간 이상)						
	실시	-						
담	수퍼비전	-						
	검사실시	10사례 이상 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)						
	검사해석	10사례 이상						
	수퍼비전	5사례 이상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)						
심 리 평 가	검사의 종류설명	*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- MMPI, HTP, BGT, DAT, SCT, KFD,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: K-WAIS, K-WPPSI, K-WISC, KEDI-WISC, K-ABC 등 단, 한 검사가 전체사례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						
		*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(개인용 이외의 검사) - 검사의 실시, 채점,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,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, 판매하는 검사 예 : 성격전단검사, 적성진단검사, MBTI 등 단, 한검사가 전체사례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						
공;	개사례발표	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, 총 10회기 이상 (3주 이상 발표 간격을 두고 발표)						
상담사례 연구활동		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						

<표3> 상담심리사 수련회 참가자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(상담심리사 2급)

		~ 2009년	2010년 ~ 2011년	2012년 ~				
접수 면접		-	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10회 이상	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				
개이	면접상담	2사례, 합 20회 이상	3사례, 합 30회 이상	4사례, 합 40회 이상				
인 상 담	수퍼비전	5회 이상 (공개사례발표2회 포함)	7회 이상 (공개사례발표2회 포함)	7회 이상 (공개사례발표2회 포함)				
집 단 상 담	참 여	-	-	1개 집단 (하계수련회 실습시간만큼 제외)				
심	검사실시	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	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	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				
리 평	검사해석	5사례 이상	10사례 이상	10사례 이상				
가	수퍼비전	2사례 이상 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포함	5사례 이상 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포함	5사례 이상 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포함				
공개사례발표		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, 총 10회기 이상 (3주 이상 발표 간격을 두고 발표)						
1 -	상담사례 변구활동	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						

4.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		6단계
학회가입	•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•	자격시험 합격	•	최소수련내용 충족	•	자격심사합격	•	자격취득

	학회가입						
1단계	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경우,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						
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						
	①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 소지(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심리						
2단계	학회의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의 자격증)						
	②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						
	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지 자격증 인정여부						
	자격시험 합격						
	<자격시험 응시서류>						
	① 자격시험 응시원서						
	② 국내 상담경력확인서						
25174	③ 이력서						
3단계	④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						
	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외국학위의 경우,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)						
	⑥ 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자격증 사본						
	⑦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						
	8 자격증 및 경력·수련실적에 대한 번역본						
	최소수련내용 충족						
4단계	<최소 수련내용 충족>						
	① 공개사례발표 1사례, 총 10회기 이상						
	자격심사합격						
	< 자격심사 청구서류>						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						
	② 공개사례발표자료						
5단계	③ 자격시험 응시서류 중, ③ ~ ⑧ 서류 제출						
5단세	※ 자격시험 응시 후, 같은 해에 자격심사에 응시할 경우, 위의 ①, ② 서류만 제출						
	※ 제출 서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						
	하시기 바랍니다.						
	● 공개사례 발표자료						
	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, 녹음자료						

	자격취득
	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
6단계	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
	납부 완료
	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